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20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Contents

1. 개요 ····· 05
-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 06
- 1.2 관련 근거 ····· 06
- 1.3 공공부문 SaaS 이용 절차 ····· 08
- 1.4 SaaS 이용 절차 간소화 ····· 10
- 1.5 용어 정의 ····· 14

2. SaaS 이용 기획 및 예산 편성 ····· 15
- 2.1 SaaS 이용 검토 ····· 16
- 2.2 SaaS 예산 편성 및 확보 ····· 17

3. SaaS 이용계약 준비 ····· 19
- 3.1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 20
- 3.2 과업심의 ····· 22
-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 23
- 3.4 직접구매 ····· 23

4. SaaS 이용계약 ····· 25
- 4.1 SaaS 제공자 선정 ····· 26
- 4.2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수준 협약 ····· 29
- 4.3 서비스 연속성 확보 ····· 30

5. SaaS 이용 ····· **31**
5.1 SaaS 이용관리 ····· 32
5.2 SaaS 이행점검 ····· 34

6. SaaS 이용종료 ····· **35**
6.1 이용계약 종료 ····· 36
6.2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 38

※ 참고: 법령명 약어표

정식명칭	약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1. 개요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1.2 관련 근거
1.3 공공부문 SaaS 이용 절차
1.4 SaaS 이용 절차 간소화
1.5 용어 정의

1. 개요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SaaS를 이용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관련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2.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참고] 현행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의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8조의2의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22.1)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부분 참고(추후 반영 예정)

1.3 공공부문 SaaS 이용 절차

○ 공공부문(국가기관등)의 SaaS 이용 절차는 SaaS 이용 특성에 따라 SaaS 이용 기획, SaaS 이용계약 준비, SaaS 이용계약, SaaS 이용, SaaS 이용종료 등의 5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SaaS 이용 기획	SaaS 이용계약 준비	SaaS 이용 계약	SaaS 이용	SaaS 이용 종료
SaaS 이용 검토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SaaS 제공자 선정	SaaS 이용관리	이용계약 종료
SaaS 예산 편성 및 확보	과업 심의	계약체결 및 서비스 수준 협약	SaaS 이행점검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개인정보 영향평가	서비스 연속성 확보		
	직접구매			

[그림 1] 가이드라인 구성

○ 단계 1 : SaaS 이용 기획

- **(SaaS 이용 검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신규구축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교체 시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 **(SaaS 예산 편성 및 확보)** SaaS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다음연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연계하여 검토된다.

○ 단계 2 : SaaS 이용계약 준비

-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용하는 SaaS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 **(과업심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심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규모 이상의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직접구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구매로 추진한다.

○ 단계3 : SaaS 이용계약

- **(SaaS 제공자 선정)** SaaS에 대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식에 따라 SaaS 제공자를 선정한다.
- **(계약체결 및 서비스 수준 협약)**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한 기관 자체계약 또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카탈로그계약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는다. 계약 시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함께 체결한다.
- **(서비스연속성 확보)** 재해·위기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백업, 소산백업 및 재해복구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 시 서비스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에 연속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단계4 : SaaS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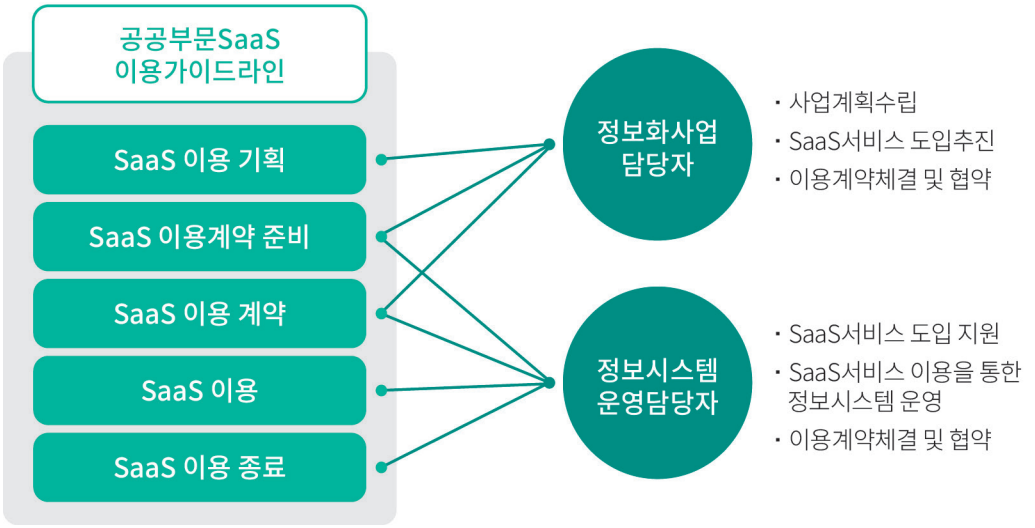
- **(SaaS 이용관리)** SaaS 이용이 시작되면, 서비스 연속성, 서비스 모니터링, 정보의 보호와 관리, 보안관제, 침해사고 및 장애통지 등을 통해 SaaS 이용관리를 수행한다.
- **(SaaS 이행점검)**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 협약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단계5 : SaaS 이용종료

- **(이용계약 종료)** SaaS 이용을 종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종료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국가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여 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를 진행한다.

1.3.2 가이드라인 활용

○ 본 가이드라인은「지능정보화기본법」상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SaaS 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림 2] 기관별 담당자의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SaaS 이용을 기획하거나 적정한 SaaS에 대한 이용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기기관등의 정보시스템운영담당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SaaS 이용계약 이후의 SaaS 이용관리를 추진하여, 이용종료 시 본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4 SaaS 이용 절차 간소화

○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상용 SW를 서비스 형태(임차 등)로 이용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제1항에 근거하여 SaaS를 상용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용 SW로 해석한다.

○ SaaS 이용은 정보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적정사업기간 산정, SW영향평가, 사전협의, 제안요청서 작성, 감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과업심의 등은 과정을 간략히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주요활동		일반 정보화사업	SaaS 이용
SaaS 이용 기획 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X
	실행계획수립 및 사업예산요구	○	○
SaaS 이용계약 준비단계	적정사업기간산정	○	X
	SW영향평가	○	X
	보안성검토	○	○
	과업심의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
	사전협의	○	X
SaaS 이용계약 단계	사업자선정	○	○
	SLA협약	X	○
SaaS 이용 단계	사업진행	○	○
	검사	○	○
	감리	○	X
	운영유지관리	○	△
SaaS 이용종료 단계	이용계약종료 및 정보 파기	X	○

SaaS 이용 시 제외 또는 간소화되는 정보화절차의 제도적 근거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제외)**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SaaS 이용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제외 요건인 소프트웨어 구매에 해당하므로 단순물품 구매 유형으로 분류되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사항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7판)

분류	ISP·ISMP 수립 제외 가능 유형
효과성 (실익 낮음)	① (단순시스템 개발)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② (단순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③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④ (단순물품 구매) 사무기기(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위주의 사업 ⑤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단순시설 또는 특수장비를 도입(구매)하는 사업 ⑥ (DB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 하는 사업 ⑦ (민간투자형 SW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기본구성 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기타	·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며, SaaS 이용은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4 SaaS 이용 절차 간소화

참고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5.〉

참고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5.〉

- **(SW영향평가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SaaS 이용은 ①항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제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8.〉

- **(과업심의 간소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SaaS 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제3항제2호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해당하여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참고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사전협의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799호)」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에 따라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대상사업의 중복개발 여부나 기관 간 상호연계를 통한 공동활용 방안을 검토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SaaS 이용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제4조제2항의 대상사업의 사전협의 제외요건(상용소프트웨어 구매·임대·설치 사업,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사항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호) 제4조(대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시 · 도 및 시 · 도 교육청은 사업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시 · 군 · 구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4. 기능변경 요구사항이 유지관리 전체 규모의 7퍼센트 미만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 노후장비의 교체(다만,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사업은 제외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구매 · 임대 · 설치, 회선 증설 · 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신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7.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8.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행정기관의 장이 타 행정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 · 설치 사업
10. 외교 · 국방 · 통일 · 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11.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2.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 **(감리 생략)**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2023.5.16.)」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SaaS 이용은 「전자정부법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1항의 제외조건인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생략할 수 있다.

참고사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5 용어 정의

용어	용어정의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Cloud Computing Service)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와 같은 의미)
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로, 물리적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사용자가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클라우드서비스 환경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의 자원 및 네트워크 보안 등 서비스가 적용된 환경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말하며, 표준등급 보안인증과 간편등급 보안인증(SaaS에 대한 보안인증 중 표준등급의 일부 인증항목을 생략한 보안인증)으로 구분
민간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민간 기업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카탈로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
이용계약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하여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계약
이용지원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 브랜드명은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2. SaaS 이용 기획 및 예산 편성

2.1 SaaS 이용 검토
2.2 SaaS 예산 편성 및 확보

2. SaaS 이용 기획 및 예산 편성

2.1 SaaS 이용 검토

○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교체 시 「클라우드컴퓨팅법」제12조 및 20조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제12조 및 20조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민간의 SaaS 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필요한 기능에 대한 기술, 기능, 품질, 가격 등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제12조 및 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SaaS를 검색한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상품은 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②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상품

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접속 → "디지털서비스 찾기" 메뉴 클릭 → 디지털서비스 키워드, 유형, 제공자별로 상품 검색
②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확인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 접속 → "로그인" → "클라우드 서비스" → "SaaS(소프트웨어)"로 상품 검색

2.2 SaaS 예산편성 및 확보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예산 요구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서비스 서비스 이용규모와 향후 변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SaaS 이용 예산편성은 ① 디지털서비스 이용료(정보화사업), ②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SaaS 이용 예산편성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규모와 사용자 수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견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한다.
- 적정비용은 SaaS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최적의 SaaS를 선정하고, 서비스 요금 및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다.

참고사항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7. 정보화 사업

〈기본지침〉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요구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전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서비스 서비스 이용규모와 향후 변동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요구

○ 신규·재구축 정보화사업은 ISP 최종산출물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 검토결과 제시

〈항목별 지침〉

(5)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대상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 편성기준

- 이용하고자 하는 디지털서비스의 규모와 사용자 수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견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 비용을 산정하여 편성

※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전환서비스, 관리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 적용대상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차량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 SaaS 도입 예산을 사전에 미 확보하는 경우에 사후 확보도 가능하다.

-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이 가능하다.

2.2 SaaS 예산편성 및 확보

참고사항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

10. 정보화 관련 예산

10-1. 적용범위

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10-2. 기본지침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SaaS 이용계약 준비

3.1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3.2 과업심의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3.4 직접구매

3. SaaS 이용계약 준비

3.1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3.1.1 보안대책수립

○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민간 SaaS 이용 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를 준수해야 하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사항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 ·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1.〉

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1.〉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 · 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 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4]의 기준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 · 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31.〉

⑦ 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 구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사항 「사이버 안보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 · 위협의 탐지 · 대응)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 · 위협을 즉시 탐지 · 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부보안관제체계를 구축 ·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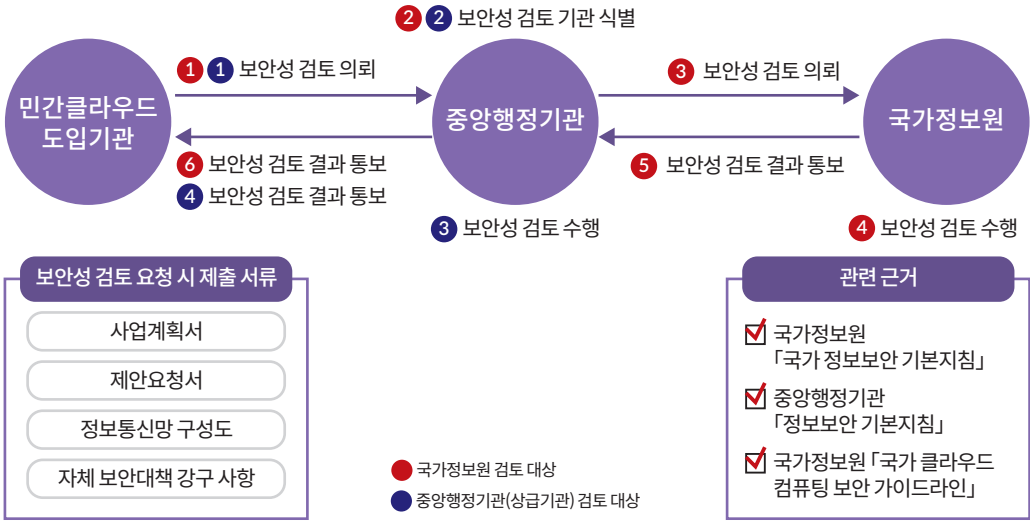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1.2 보안성 검토

○ SaaS 이용 시 국가기관등은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각 사업의 "계획단계"(사업공고 전)에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기관으로 정보화사업의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 SaaS 이용을 추진하는 하급기관은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도입요건 확인절차에 따라 도입요건이 확인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 SaaS는 내부 구성, 기술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면제된다. 다만 민간클라우드도입기관(이용기관)의 이용환경, 이용대상 등의 보안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보안성 검토가 추진된다.



[그림 3] 보안성 검토 절차

3.1.2 보안성 검토

참고사항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제15조(검토 기관)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하급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검토 기관)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화사업의 규모 ·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3.2 과업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업심의위원회는 제50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 **SaaS 이용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해당하여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참고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에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절차이다.

○ 일정규모 이상의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참고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 ·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3.4 직접구매

○ 발주기관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추진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여야 한다.

3.4 직접구매

참고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접구매대상은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SaaS)를 대상으로 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SaaS)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제1호에 의거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여 직접구매 해야 한다.**

참고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대상)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개정 2023. 5. 15.〉

4. SaaS 이용계약

4.1 SaaS 제공자 선정
4.2 계약체결 및 서비스 수준 협약
4.3 서비스 연속성 확보

4. SaaS 이용계약

4.1 SaaS 제공자 선정

○ 국가기관등이 Saa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의3(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8~11)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사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9.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0.9.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신설 2020.9.24.〉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선정하고 편리하게 계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에 등록되며,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비교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 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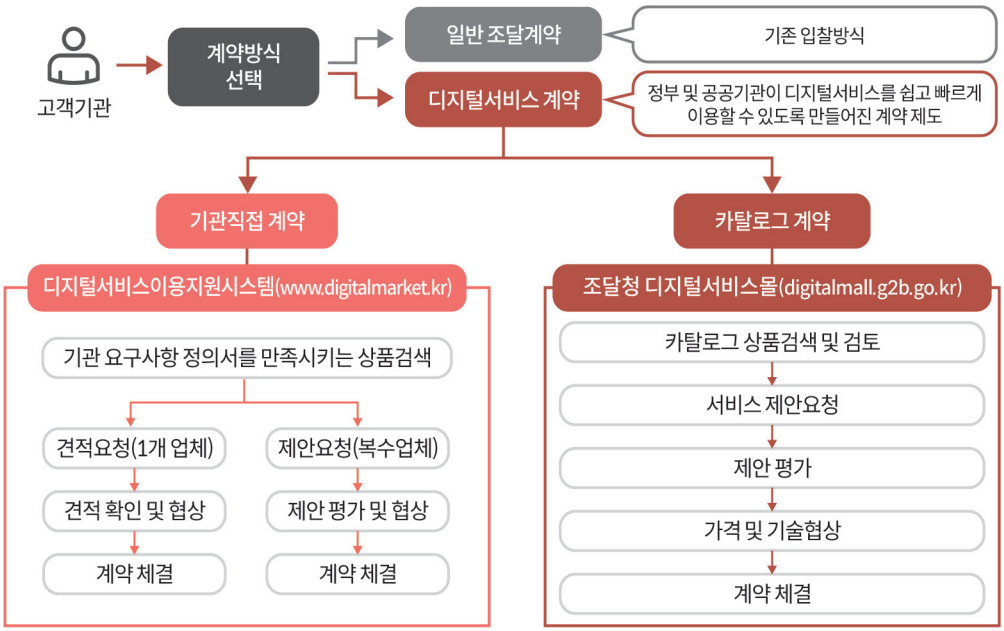
③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2.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 **선정된 디지털서비스[1]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제76조의8~11)에 따라 기관 직접계약과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카탈로그계약), 공동계약, 장기계약 등이 가능하다.**



[그림 4] 사업자 선정방식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 및 디지털서비스몰(조달청)에서 확인가능

4.1.1 기관직접계약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이용하여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SaaS 서비스를 선택한다.

- 1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견적 확인 및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SaaS를 선정하고 국가기관등 내부의 계약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방식으로 진행한다.

- 복수 업체의 경쟁을 통해 계약할 경우 각각의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용대상 SaaS를 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의 내부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을 수행한다.

참고사항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이용한 기관직접계약 절차

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기관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족시키는 SaaS 상품 검색
②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관심서비스/장바구니담기/견적요청 진행: 1개 업체와 계약할 경우 견적요청, 복수 업체의 경쟁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안요청
③ 견적 확인 및 협상 또는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용대상 SaaS 선정/계약

4.1.2 중앙조달계약

-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을 통해 디지털서비스(SaaS) 카탈로그 검색 및 검토하여 1개의 디지털서비스(SaaS)를 선택하여 해당업체에 제안을 요청한다.

- 제안서 평가, 가격 및 기술협상을 통해서 이용대상 SaaS를 최종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참고사항 디지털서비스몰 이용한 중앙조달계약 절차

①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검색 및 검토
② 금액제한 없이 1개 서비스에 대해 제안 요청
③ 제안서 평가 및 협상(가격 및 기술)
④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4.2 계약체결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4.2.1 계약체결

○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의 SaaS 이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를 참조하여 이용대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표준계약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의 이용과 중단·종료, 이용자 정보의 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계약자는 이러한 표준계약서와 계약서 및 서비스수준협약서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클라우드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항을 보완할 수 있다.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는 조달청이 해당 SaaS에 대한 카탈로그 계약[2]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아닌 납품요구를 추진하게 된다.**

○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담당자는 SaaS 이용의 해제 및 해지로 SaaS 제공자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SaaS 제공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SaaS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이관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비스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2.2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aaS의 안정적인 이용과 품질 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담당자는 SaaS제공자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한다.**

- 서비스수준협약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서비스 기간, 서비스 수준 지표 및 목표 수준, 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급, 서비스 수준의 평가 방법·절차, 서비스 수준의 평가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시행한다.

○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기준」 제4조제1항의 아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 카탈로그 계약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4.2.2 서비스 수준 협약(SLA)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기준」 제4조(품질·성능 기준)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
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
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
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
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
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 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
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 체계 및 처리 절차

-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명확히 하지 못하는 서비스 수준 지표의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에 추가로 명기할 수 있다.

4.3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국가기관등은 재난·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SaaS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이 이용가능한 민간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는 인증과정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서비스 장애 대응, 서비스 가용성 대응 등)이 검증된 상태이다.

-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운영담당자는 재해·위기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백업, 소산백업 및 재해복구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 시 서비스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에 연속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SaaS 이용

5.1 SaaS 이용관리
5.2 SaaS 이행점검

5. SaaS 이용

5.1 SaaS 이용관리

5.1.1 서비스 연속성 지속 관리

- SaaS 제공자에게 서비스 계약서 또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 정기·수시로 보고받거나 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2 서비스 모니터링

-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운영담당자는 SaaS 이용자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수집하여 서비스 이용량과 이용요금,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필요 시 이용현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관과 SaaS 제공자 간의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1.3 정보의 보호와 관리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Saa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용(자) 정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와 일반정보로 나눌 수 있음

-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국가기관등에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에 따라 SaaS 제공자가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 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활동 및 책임 수행. 필요시 SaaS 제공자에 보안사항 준수 요구
  - (SaaS 제공자) 국가기관등 요청시 정보보호 관련 보안사항 준수

-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리적·물리적·기술적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SaaS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법」제27조에 따라 검토한다.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1.4 보안관제

○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24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하기 위한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참고사항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14조(사이버공격 · 위협의 탐지 · 대응)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공격 · 위협을 즉시 탐지 · 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부보안관제체계를 구축 ·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 ·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5.1.5 침해사고 및 장애통지

- **이용중인 SaaS에 대해 침해사고 및 장애가 발생 시 SaaS 제공자로부터 신속하게 통보를 받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침해사고 및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SaaS 제공자가 이용기관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2 SaaS 이행점검

- **제공받는 SaaS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의 서비스 수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용 중인 SaaS 품질 수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SaaS 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SaaS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행 부적합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페널티는 서비스 계약서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집행한다.

6. SaaS 이용종료

6.1 이용계약 종료

6.2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6. SaaS 이용종료

6.1 이용계약 종료

○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 해제 · 해지 또는 기간만료 등에 따라 SaaS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시 태만·해제·요건 미충족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약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SaaS 계약 취소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의 해제와 해지이다.

- (SaaS 계약의 해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비용, 이자, 가치변동 등을 정산한 후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
- (SaaS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의 미래 종료 시점까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고, 남은 계약 기간을 취소하는 행위

○ SaaS 이용종료는 ① SaaS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SaaS 해제 및 해지, ② 기관의 요구로 인한 SaaS 해제 및 해지, ③ 기간 만료 등 3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6.1.1 SaaS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SaaS 해제 및 해지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해제 및 해지 사례(예시) 〉

1.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
2.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수준 협약에 합의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자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디지털서비스 선정 취소 혹은 보유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취소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항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협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SaaS 제공자에게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하고, SaaS 제공자는 해제·해지 처리한다.

6.1.2 기관의 요구로 인한 SaaS 해제 및 해지

○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SaaS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SaaS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중 미지급 금액
2.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액

[관련 법령/자료]「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제29조~제31조

6.1.3 계약기간 만료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SaaS 제공자에게 종료 30일 전까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계약 종료 일시, ②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④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⑤ 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계약에 반영하고 요구해야 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 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 · 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1.3 계약기간 만료

○ **SaaS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에 따라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2. 이용자 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4.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 · 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 **SaaS 제공자는 계약 해제 · 해지 또는 기간만료 시 이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 정보란, SaaS 이용자가 SaaS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를 말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정의)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SaaS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 시기, 반환정보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의 형태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용자 정보 반환을 통지해야 한다.**

6.2.1 이용자 정보 반환

-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는 암호화 해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완전한 호환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6.2.2 이용자 정보 파기

- SaaS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 반환 통지 기간이 지난 후, ① 이용자가 반환받지 않거나 ②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③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SaaS 제공자의 파기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 정보 파기 시행 여부 확인 시 고려할 사항: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SaaS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않거나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클라우드컴퓨팅법」 제37조제1항 제3호). 그러나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해서 SaaS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 11.〉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 유출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6.2.3 데이터 이관 시

○ **서비스 계약서 조항에 따라 데이터 이관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추진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7조 제3항~제6항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 · 시기, 계약 종료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제6항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 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 · 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